하자재발통보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소유자	성명 (명칭)	생년월일	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주소		
	연락처	전자우편 주소	
대상 자동차	제작자명	인도날짜	년 월 일
	차명	등록연월일	
	모델연도	주행거리①	km
	등록번호	차대번호	
동일한 하자 수리내역	하자구분② [ ] 중대한 하자, [ ] 일반 하자		
	1회 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수리완료일
	1회 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
	2회 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수리완료일
	2회 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
	3회 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수리완료일
	3회 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
	수리 시도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? [ ] 예(_____회), [ ] 아니오		
	누적 수리기간 : 총 _____일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귀하

유의사항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의 자동차가 수리를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,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시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하자재발 미통보 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3.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・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합니다.

작성방법

1. ①은 중대한 하자는 1회,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2. ②중대한 하자, 일반 하자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,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.
   · **중대한 하자**: 원동기(동력발생장치) 및 동력전달장치, 주행장치, 조종장치,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완충장치, 연료장치,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·전자장치, 차대(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)
   · **일반 하자**: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